

← 우리방문요양센터 19



네

오후 9:18

1월 교육자료 올립니다.

오후 9:18



배인석어르신삼호2동1001호배우자님

넵

오후 9:18



우리민병화선생님304/106

네.알겠습니다

오후 9:18

개인정보지침.pdf

유효기간 ~2026. 2. 13.

용량 616.36 KB



종사자윤리지침.pdf

유효기간 ~2026. 2. 13.

용량 1.34 MB



오후 9:18



청주노지현쌤상당구영운천로93-1

네

오후 9:19



우리홍순명선생님

네...

오후 9:21



우리송강그린이현옥선생님



메시지 입력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기관운영과 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와 항목)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세부 항목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다.

제6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기관은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기관은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얻은 후 급여제공서비스 기간동안 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이용서비스의 종료시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도록 한다

제10조(동의를 철회)

기관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기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 1월 직원 교육 자료 올려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속에서 재가복지센터 종사자는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
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윤리지침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실제 사례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종사자 윤리지침 ■

1. 기본적인 태도와 책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무단결근이나 근무 태만은 금지합니다.
보고와 기록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어르신 존중과 권리보장

어르신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반말, 명령어, 유아어 사용을 피하고, 항상 눈높이에 맞춰 대화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어르신의 의사와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차별 없는 서비스

인종, 연령, 성별,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모든 어르신은 공평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4. 친절과 예의

어르신 앞에서는 피곤하거나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적인 금전거래(돈 빌리기, 뇌물받기, 물건 팔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5.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어르신의 건강, 가족사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목적 외에는 발설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6.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외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7.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요양보호 현장에 적용합니다.
근거 없는 편견이나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8.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어르신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9. 마무리

종사자 윤리지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어르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실천 약속입니다.
종사자가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는 더욱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

종사자 윤리 지침 -세부지침-

1. 기본 윤리

- 1) 우리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인종·성별·연령·국적·결혼상태·성격·경제적 지위·정치적 성향·정신적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4) 우리는 사회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종사자 윤리 지침 -세부지침-

2. 전문가로서의 윤리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 1) 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 2)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제공 시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4) 우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5) 우리는 기관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어르신(수급자)에 대한 윤리

- 6) 우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어르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
- 7) 우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 하여서는 안 된다.
- 8)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르신과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9) 우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 10) 우리는 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 윤리 지침 -세부지침-

4.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 1) 우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 3) 우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4)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어르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5) 우리는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우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 민주적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 윤리 지침 -세부지침-

5.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1) 우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2) 우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3) 우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 4)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사자 윤리 지침 -세부지침-

6.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1) 우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 우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해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우리는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